

[ ] 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 
[ ] 품종보호권 회복

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대리인	성 명	생년월일
	주 소	전화번호
사건의 표시	출원번호	등록번호
	작물의 명칭	품종의 명칭

품종보호료 미납 사유

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산 림 청 장  
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  
국립수산과학원장

신청인 제출서류	1.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보호품종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품종보호권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

### 작성방법

1.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([ ] 품종보호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, [ ] 품종보호권 회복) 중 해당란에 표시(√)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합니다.
2. "등록번호"란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만 적습니다.
3. 그 밖의 사항은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, "신고인"을 "신청인"으로, "신고서"를 "신청서"로 보아 적어야합니다.

#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